

## 2021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경기도지사

###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도모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 신청한 사업과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지급
    - 도비 매칭 투자 시(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군포, 이천, 여주) 소재 기업은 기업 당 76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시비)
    - 이외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당 38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협약체결→지원금 선지급(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소재지별 지원금 한도(76백만원, 38백만원) 확인)→과제 중간점검→과제 완료 및 지원금 정산→정산 잔액 반납

○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 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 특허동향, 시장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스마트혁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공정개선, 자동화설비도입,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검증, 컨설팅 등
	온택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온라인 판로지원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화상회의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클라우드서비스
언론홍보지원		기획보도, 카드뉴스, 지면광고 등 통합홍보 지원

- 공고문 붙임문서 ‘세부 과제별 운영기준’ 참고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 신청과제 개요 및 예산사용계획에 제출된 세부 과제(예, 전시회참가 지원, 제품규격인증 등)에 대해 `21년 1월~협약일까지 진행된 건은 소급신청 가능
- 지원금 한도 내 지원 분야에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신청 가능  
ex) A 기업 : 시제품 2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국내외전시회참가 1건  
B 기업 : 국내외전시회참가 3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제품규격인증 1건

○ 우대혜택 : 스타기업 선정 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가점 부여

## 2 신청자격 및 방법

□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③ '20년 매출액 또는 '18년~'20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평균매출액 : (18년 매출액+19년 매출액+20년 매출액) ÷ 3 ※ 지식서비스기업: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종목이 있는 경우 반영 가능.
and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참고 2)	① '20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0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19년 ~ '20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20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 수/전기 상시근로자 수) × 100 - 100

□ 신청 제외대상 : 2011년~2020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2016년~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플러스 선정 기업

###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제16조 및 17조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확인원(세무사 날인본)</li> <li>*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li> <li>*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li> <li>*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li> <li>*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li> <li>■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을 때는 공인회계사의 <b>R&amp;D 투자 비율 확인서</b>로 판단</li> <li>* R&amp;D 투자 비율 확인서는 자유 양식(별도 양식 없음)</li> </ul>
수출액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li> <li>*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band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li> <li>* KTNET(www.ktnet.com) 발행본</li> </ul>
고용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b>귀속연월 12월분</b>)</li> <li>* 상시근로자 : 연도별 <b>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b>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li> <li>·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li> </ul> </li> <li>예) '19년 12월 기준 A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명이었으나 '20년에 4명이 퇴사하고 4명이 입사한 경우 고용증가율은 0명 임.</li> <li>'19년 근로자 수(50명) 기준 ±로 증가율 파악</li> <li>*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li> </ul>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공고문 5페이지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서류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파일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검색 창에 “스타기업” 검색 ⇒ “2021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제출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4. 5.(월) 18시까지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지정양식] 참여신청서(양식 제출서류 1) 및 추진계획서(양식 제출서류 2)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양식 제출서류 3) 1부.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양식 제출서류 4)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관리시스템 : www.rnd.or.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⑥ '18년 ~ '20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20년 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날인본) 제출) * '18년~'19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 선정기업이 '20년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이후 증명원 추가제출 필요.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년 ~ '20년,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 수는 각 연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지방세납세증명
	⑨ 산업재해를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선택 제출	⑩ 공장등록증 사본(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 1부 * 필수조건 중,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⑪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4쪽 [참고2] 참조)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연구개발비 확인서(재무제표상 보이지 않을 경우) *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수출증빙서류(무역협회, KNET 등) *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해당 없음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해당 없음
	⑫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7쪽 [참고3] 참조)

###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⑧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⑨ 대기업 · 중견기업
  - ⑩ 2011년~2020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선정 기업  
\* 2017년까지의 사업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⑬ 2020년 재무제표확인원 기준 평가 후 확정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 ⑭ 월드클래스플러스, 월드클래스 300, 2016년~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 기업  
\* 동일 년에도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동시 선정 불가로 2021년도에 중복 선정되었을 경우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중 택1 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⑦, ⑧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4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최종점수 = 서류평가(40점) + 발표평가(60점) + 가산점(10점)

- ① **요건심사** :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외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 ② **서류평가** : 기업역량(재무상태, 일자리창출 등)

구분	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산업재해율)	고용창출
배점	40점	10점	5점	10점	5점	10점

- 재무상태는 최근 3개년도( '18년~'20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
- 서류평가(40점) 및 가산점(10점) 합산 결과 **94개사** 내외 발표평가 상정
  - **94개사** = 47개사(기업당 76백만원 대상 기업) + 47개사(기업당 38백만원 대상 기업)
  - 동점기업 발생 시 발표평가 대상에 모두 포함.

### ③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 [참고 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인증서)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경기도 창업사업 졸업기업 (확인서)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확인서)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참여확인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협약서)
- 여성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친환경인증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http://www.benis.or.kr) 에서 발급)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 또는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장으로부터 과제확인서 발급
- 장애인 기업 (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인증서)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http://www.mctnet.org) 에서 발급)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④ 발표평가 : 기업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분	배점	세부항목	평가기준
계획의 적정성	15점	명확성, 구체성	사업목표의 부합성, 목표의 명확성, 시장 및 특허조사 등 준비의 충실성,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제품 콘셉트 및 설계의 완성 정도, 과제계획 및 일정의 실현 가능성
기술성	15점	핵심기술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실적,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4차 산업 기술·제품, 기술개발, 기술개발인력
사업성	15점	미래 시장성·성장성 마케팅능력	시장 전망, 경쟁 강도, 시장 지위, 제품경쟁력, 매출 성장성, 미래 수익성, 판매(영업)관리, 거래 안정성
기대효과	10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내 산학연 협업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수입대체(단가 인하)효과
윤리경영	5점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	인권 및 고용 평등(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인력개발(교육훈련비용 및 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합 계	60점		

⑤ 최종선정 : 서류평가, 가산점, 발표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40개사 내외 선정

- 예비(후 순위) 기업 10개사 내외 규모로 선정하며 경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선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既선정기업 포기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단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함)
- 참여 시 지원예산 범위 내 추가선정이 가능할 경우 경기도 스타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 Pre-star 육성사업으로 선정됨. (지원금 한도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함.)



## 5 추진일정

사업 공고	▶ 경기도	'21. 3. 2.
↓		
신청·접수	▶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www.egbiz.or.kr)	~ '21. 4. 5.
↓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필요 시 현장평가) ▶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발표평가 일정 개별안내	(서류평가) '21.4.6.~4.14. (발표평가) '21.4.21.~4.27.
↓		
선정기업 간담회	▶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1. 4월 말
↓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1. 5월 중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선지급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		
과제수행 완료 및 예산사용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 11. 30. 까지 수시제출(과제완료 시)
↓		
지원금 정산 및 점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21. 12. 10. 까지 수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문의처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원진식 주무관)	031-8030-3042	etudiant@gg.go.kr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전유리 과장, 한영수 대리)	031-259-6494, 6493	star@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031-259-6299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E-mail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 [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